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
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.

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
따른 인구감소지역(이하 “인구감소지역”이라 한다): 매월 1만원. 다
만, 출산율,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
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.

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
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: 매월 5천원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
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”을 “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
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
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
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
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) 법률 제00000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.</u></p> <p>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(이하 “인구감소지역”이라 한다): 매월 1만원. 다만, 출산율,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 로 한다.</p> <p>2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 외한 지역: 매월 5천원</p>
<p>제10조(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</p>	<p>제10조(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</p>

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다만,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1. ~ 4.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“상품권”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

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---

---. -----

-----.

② -----

제출해야 ----- 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여 발행·매출한 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“발행자등”이라 한다)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

④ ~ ⑥ (생략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29